

의안번호	2204289
의 퇴 인	한정애 의원
회 답 일	2024.11.15.
추 계 번호	24B4042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노동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교육 기본계획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840만원, 2030년 84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200만원(연평균 1,84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노동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6조)	8.4	8.4	8.4	8.4	8.4	42.0	8.4
노동교육 기본계획 등 (안 제7조)	50.0	—	—	—	—	50.0	10.0
추가재정소요	58.4	8.4	8.4	8.4	8.4	92.0	18.4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노동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제2항) 1. 노동교육의 정책 방향 2. 제7조에 따른 노동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3. 제8조에 따른 노동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4. 노동교육 업무의 협력·조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제4항) 1. 교육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노동계, 경영계, 학계, 노사전문가 중에서 노동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2	안 제7조(노동교육 기본계획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1.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동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5. 여성,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노동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노동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노동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대상, 내용,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학교 노동교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교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11조(사업장에서의 노동교육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2조(노동교육센터의 지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원 2. 노동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노동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5. 그 밖에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동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항에 따른 노동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교육센터, 노동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노동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	• 유사사례 참고
2	안 제7조(노동교육 기본계획 등)	○	• 유사사례 참고
3	안 제8조(노동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	• 미첨부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노동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할 경우 발생하나, 노동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대상, 내용,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9조(학교 노동교육)	×	• 미첨부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학교 노동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교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경우 발생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추가 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11조(사업 장에서의 노동교 육 실시)	×	• 미첨부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 지원할 경우 발생하나, 지원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사업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으며, 지원 금액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안 제12조(노동 교육센터의 지정 등)	×	• 미첨부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지정 노동교육센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에 따라 발생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으며, 지원 금액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7	안 제16조(업무 의 위탁)	×	• 미첨부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노동교육센터, 노동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에 업무의 위탁에 따라 발생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노동교육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6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일하는 사람 노동교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구성) 제정안에 따른 노동교육위원회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노동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임
 - － 제정안은 노동교육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호와 2호의 비율을 1:1로 가정
 1. 교육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노동계, 경영계, 학계, 노사전문가 중에서 노동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민간위원: 7명
 - (단가)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¹⁾
 -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횟수) 회의개최 횟수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노동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7	7	7	7	7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8.4	8.4	8.4	8.4	8.4	42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8)

나. 노동교육 기본계획 등(안 제7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노동교육 기본계획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2023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5,0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

[표 3] 노동교육 기본계획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노동교육 기본계획 등	50	—	—	—	—	5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노동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교육 기본계획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840만원, 2030년 84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200만원(연평균 1,84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노동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6조)	8.4	8.4	8.4	8.4	8.4	42.0	8.4
노동교육 기본계획 등 (안 제7조)	50.0	—	—	—	—	50.0	10.0
추가재정소요	58.4	8.4	8.4	8.4	8.4	92.0	18.4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